중 국

[판례 분석]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2026. 01. 22.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제공자는 플랫폼 관리자와 콘텐츠 생산자의 이중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AI 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사용자와 협력하여 저작권 침해를 하였다면 직접 책임이 있음. 반대로 직접 침해는 하지 않았지만 AI 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 내 저작권 침해 사실과 그 침해의 결과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고, 이를 예방할 기술적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접 침해가 성립됨.

1. 현황

최근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생성형 AI 서비스가 널리 보급되고 있음. 생성형 AI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텍스트•이미지•음성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기술로서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AI 서비스는 훈련 데이터로 대량의 저작물을 사용하며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가 기존 저작물과 유사할 수 있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유명 캐릭터나 예술 작품을 AI로 학습시켜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본문에서는 생성형 AI 플랫폼 사용자가 울트라맨 캐릭터 이미지 학습 및 유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살펴보고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성질과 저작권 침해 인정 기준에 대해 분석함.

2. 판례소개

사건 번호	1심	(2024)浙0192民初1587号
	2심	(2024)浙01民終10332号
관할 법원	1심	항저우 인터넷법원(杭州互聯网法院)
	2심	저장성 항저우시 중급인민법원(浙江省杭州市中級人民法院)

당사자	A 회사		1심: 원고	2심: 상소인
	B 회사		1심: 피고	2심: 피상소인
핵심 쟁점	1심	1. A 회사는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원고적격 여부 2. B 회사의 행위가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3. B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B 회사의 법적 책임		
	2심	1. B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B 회사의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		
판결 결과	1심	1. A 회사는 A 회사가 권리를 주장하는 저작물에 대한 원고적격이 있음. 2. B 회사의 행위는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함. 3. B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4. B 회사는 A 회사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A 회사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 비용 30,000위안을 배상해야 함.		
	2심	1. B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2. 상소 청구 기각, 원심 유지		
관계 법령	▪ 저작권법(著作權法) 제2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競爭法) 제2조 ▪ 저작권 민사분쟁사건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著作權民事糾紛案件适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 제7조, 제25조, 제26조 ▪ 정보네트워크전파권침해 민사분쟁사건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最高人民法院關于審理侵害信息网絡傳播權民事糾紛案件适用法律若干問題的規定) 제3조, 제7조, 제9조			
최종 판결일	2024년 12월 30일			

(1) 사건 개요

A 회사는 저작권자로부터 울트라맨 시리즈 캐릭터와 관련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았음. B 회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X AI 플랫폼을 통해서 Checkpoint, LoRA 모델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통한 이미지 생성, 온라인 모델 학습 등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X AI 플랫폼의 홈페이지에서 울트라맨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울트라맨 AI 생성 이미지 및 울트라맨 LoRA 모델을 검색할 수 있는데, X AI 플랫폼 사용자는 LoRA 모델을 통해 울트라맨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플랫폼 기초 모델을 선택한 후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울트라맨 LoRA 모델을 생성할 수

있음. 분쟁 모델에는 울트라맨 캐릭터와 유사한 표지 이미지와 예시 이미지(이하 "분쟁 모델 이미지"라 함)가 부착되어 있음. 이후 다른 사용자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기초 모델을 선택하여 울트라맨 LoRA 모델을 중첩함으로써 울트라맨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이하 "분쟁 생성 이미지"라 함)를 생성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A 회사는 B 회사가 울트라맨 LoRA 모델을 생성하고 울트라맨 캐릭터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A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2) 핵심 쟁점

본 안건에서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B 회사가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B 회사의 법적 책임임. A 회사는 B 회사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모두 구성한다고 주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만 인정하고 B 회사의 부정경쟁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2심 법원은 B 회사의 부정경쟁행위의 성립 여부만을 판단하여 이를 부정하였음. 그 외에도 1심 법원은 B 회사의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성격을 규정한 후에 B 회사의 직접 침해 여부 및 간접 침해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였음. 상술한 사항을 종합해보면 본 안건에서 저작권 분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음. 본 안건의 2심에서는 B 회사의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다루고 있으므로 본문의 내용은 1심 법원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함.

① A 회사의 저작권에 대한 B 회사의 직접 침해 여부
② A 회사의 저작권에 대한 B 회사의 간접 침해 여부

(3) 법원의 판단

1) B 회사의 직접 침해 여부

① 실질적 유사성 여부

본 안건에서 분쟁 모델 또는 분쟁 생성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X AI 플랫폼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생성됨.

a. 모델 훈련을 통한 이미지 생성(분쟁 모델 이미지)

사용자가 모델 생성을 선택하고 울트라맨 관련 이미지를 업로드한 후 기본 모델을 선택하여 매개변수 조정 후 그 모델을 훈련함으로써 분쟁 모델이 생성됨. 분쟁 모델에 표시되어 있는 표지 이미지 및 예시 이미지는 울트라맨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해당 모델은 수집, 적용, 게시 또는 링크 공유가 가능함.

b. 훈련된 모델에서 프롬프트 입력을 통한 이미지 생성(분쟁 생성 이미지1)

사용자가 울트라맨 관련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기본 모델 선택 및 울트라맨 LoRA 모델을 추가

한 후 매개변수를 조정함으로써 분쟁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음. 생성된 이미지는 수집, 게시, 다운로드 또는 링크 공유가 가능함.

c. 업로드 이미지를 통한 이미지 생성(분쟁 생성 이미지2)

사용자가 업로드한 울트라맨 이미지, 울트라맨 관련 프롬프트, 기본 모델을 선택하고 매개변수를 조정한 후 분쟁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음. 해당 이미지 역시 수집, 게시, 다운로드 또는 링크 공유가 가능함.

분쟁 모델 이미지 및 분쟁 생성 이미지 1, 2는 울트라맨 캐릭터를 텍스트 프롬프트와 결합하여 수정한 결과물로서 이러한 AI 연산을 통한 수정은 단지 울트라맨 이미지의 자세 동작 등에 대한 단순한 수정에 불과하며 주요 역할은 이미지의 배경 내용이 프롬프트 지시에 따라 나타나도록 하는 데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분쟁 모델 이미지 및 분쟁 생성 이미지 1, 2는 울트라맨 캐릭터 이미지와 색채 배합, 의상 디테일 등에서 높은 유사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을 구성함.

②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성격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임시방법(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생성형 AI 기술이란 텍스트, 이미지, 음성, 비디오 등의 콘텐츠 생성 능력을 가진 모델 및 관련 기술을 의미하며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란 생성형 AI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형 AI 서비스(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터페이스 제공 등을 포함)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지칭함.

본 안건에서 B 회사가 사용하는 생성형 AI 기술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음. X AI 플랫폼은 제3자 SD 오픈소스 모델을 호출하고, SD 텍스트-이미지 생성, 이미지-이미지 생성, LoRA 모델 훈련 코드 프레임워크 하에서 플랫폼의 요구 및 사용 정황에 따라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통합, 데이터 관리,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결합하고, 캡슐화, 전송, 저장 등 일련의 엔지니어링 작업을 완료하여 사용자에게 AI 이미지 생성 및 모델 훈련 기능을 제공하며 이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를 통해 사용자에게 AI 연산을 제공함. 그 중 X AI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Checkpoint 기본 모델은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이미지 특징을 학습하고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이미지 생성에 필수적인 모델이며, SD 프로토타입 모델을 기반으로 매개변수 미세 조정, 스타일 분할 후 얻은 모델로서 주로 AI 이미지 생성 및 LoRA 추가 모델 훈련에 사용되어 해당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애니메이션, 사실적, 디자인 등 다양한 스타일과 장면의 디자인 도구를 제공할 수 있게 하며 사용자는 주어진 프롬프트, 업로드 이미지, 모델 선택 등 조건에 따라 다양화된 이미지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음. 한편 LoRA 기술(Low-Rank Adaptation)은 사용자가 훈련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기본 모델을 기반으로 훈련하여 LoRA 추가 모델을 얻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기본 모델이 생성할 수 없는 내용을 보완하거나 특정 이미지 특징을 강화함으로써 생성된 이미지를 정교화 및 개인화 처리하여 특정 예술 스타일과 창작 수요에 더 부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함.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하면, B 회사는 X AI 플랫폼을 통해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하

여 사용자에게 온라인 AI 이미지 생성, LoRA 모델 훈련 등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므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임시방법> 규정에 따른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속함.

③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여부

본 안건에서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 회사가 직접 분쟁 모델 이미지 및 분쟁 생성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해당 분쟁 이미지를 생성하는 X AI 플랫폼의 사용자와 분업·협력 관계에 있어야 함.

B 회사가 분쟁 이미지를 직접 제공하거나, 훈련 자료를 제공하여 데이터 훈련을 진행한 후 분쟁 이미지를 생성•전파하는 X AI 플랫폼의 사용자와 분업·협력하여 분쟁 이미지의 공동 제공자가 되는 경우, B 회사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로서 직접 저작권 침해 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본 안건에서 데이터 훈련에 사용된 분쟁 이미지와 LoRA 모델의 표지 이미지•예시 이미지는 모든 사용자에 의해 업로드된 것이며, 이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록 사용자의 이미지 생성 행위가 B 회사가 제공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고 관련 분쟁 이미지도 사용자의 X AI 플랫폼사용 또는 공유를 통해 생성되었지만, 명령어를 입력하여 내용을 생성하고 그 수신자를 결정하는 것은 X AI 플랫폼의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며 B 회사는 사용자가 실시한 참고 이미지 업로드, 생성 이미지 게시 및 공유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음. 주관적 측면에서 볼 때 A 회사가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그 사용자와 공동으로 분쟁 이미지를 제공하려는 의사 소통이 있었다는 증거도 부족함. 따라서 B 회사는 분쟁 이미지의 제공자가 아니며,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이 통제하는 행위를 직접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B 회사의 행위는 직접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

2) B 회사의 간접 침해 여부

① 생성형 AI 제공 서비스의 주의 의무

a. AI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권리 보호 기준

AI 산업이 미래 발전의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원은 관련 산업 발전과 안전을 동시에 중시하고 혁신 촉진과 법치 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해 포용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권리 보장과 서비스 산업의 고효율 발전을 도모해야 함. 생성형 AI는 주로 데이터 입력, 데이터 훈련, 콘텐츠 출력, 콘텐츠 사용의 네 가지 중요한 단계로 구성됨. 생성형 AI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볼 때 대형 모델의 데이터 입력, 데이터 훈련 행위에 대한 침해 인정은 상대적으로 관대하고 포용적인 인정 기준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대형 모델의 생성 콘텐츠 출력, 생성 콘텐츠 사용 행위에 대한 침해 인정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인정 기준을 취하여 분류별 대책을 통해 발전과 보호의 균형을 실현해야 함.

b. 두 종류의 생성형 AI 서비스

생성형 AI 서비스는 AI 기술의 발전 및 보급과 함께 최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서비

스로서 기존의 온라인 콘텐츠 제공, 온라인 저장공간 서비스 제공 및 검색 링크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주로 플랫폼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달리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콘텐츠 생산자와 플랫폼 관리자의 두 가지 역할을 모두 담당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이중 역할'에 기인하여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개입할 수도 있음. 다른 한편으로는 플랫폼 사용자가 프롬프트 입력, 이미지 등 훈련 자료 업로드 및 생성 여부와 공개 전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 자료를 직접 제공하거나 출력 내용 및 출력 과정을 완전히 통제하고 개입할 수도 없음. 이 경우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플랫폼 관리자의 역할로서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훈련 이미지 등의 데이터 내용 및 생성물의 전파 등 행위에 대해 당연히 사전 심사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침해 행위에 대해 과실이 있을 때만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간접 침해가 인정됨.

c. 과실 인정 기준

과실 인정 규칙에 대해서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성질, 현재 AI 기술의 발전 수준, 손해 방지 대체 설계의 실행 가능성 및 비용, 취할 수 있는 필요 조치 및 그 효과, 침해 책임 부담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인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플랫폼에서의 주의 의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확정해야 함. 구체적으로 말하면,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가 동일 업계 일반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력으로는 해당 생성 내용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침해 발생 당시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필요 조치를 취하여 손해를 예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해 발생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으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해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해야 함.

d. AI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주의 의무 정도

X AI 플랫폼이 호출하는 SD 오픈소스 모델은 오픈소스 모델로서 B 회사가 실제로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2차 이용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약하기 어려움. 반면 애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직접 최종 사용자에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사용 수요를 직접 충족시키는 해결 방안과 결과를 제공함. 이러한 유형의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접 이익을 얻기 때문에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유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함.

② 저작권 침해 발견 가능성 정도

a. 울트라맨의 인지도 및 침해행위에 대한 인지 가능성

울트라맨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X AI 플랫폼 홈페이지 다수의 항목에는 울트라맨 이미지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애니메이션 이미지가 다수 존재하고 일부 이미지의 프롬프트, LoRA 모델의 해시테그 및 그 명칭에 '울트라맨'이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음. 그 외에도 X AI 플랫폼 사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훈련 이미지를 LoRA 모델 표지 이미지 또는 예시 이미지(분쟁 모델 이미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이를 직접 설정하지 않는 경우 X AI 플랫폼은 사용자가 업로드한 첫 번째 훈련 이미지를 분쟁 모델 이미지로 자동 설정함. 이와 같은 사항을 통하여 분쟁 생성 이미지 및 분쟁 모델 이미지는 비교적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B 회사는 높은 인지도를 가진 울트라맨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내용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b. 침해 결과에 대한 인지 가능성

X AI 플랫폼 사용자가 단지 울트라맨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Checkpoint 기본 모델을 선택하여 훈련할 경우 울트라맨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직접 생성할 수 없지만 동시에 울트라맨 LoRA 모델을 추가하여 훈련할 경우 울트라맨과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사용 행위 결과에 대해 식별 가능성, 개입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에 대한 맞춤형 생성이 아니라 무작위 생성을 실현함. 그러나 본 안건에서 Checkpoint 기본 모델에 울트라맨 LoRA 모델을 추가한 것과 같이 특정 이미지에 대해 맞춤형 훈련이 된 모델이 추가된 경우, 특정한 캐릭터 이미지의 특징을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으며 이때 생성형 AI는 사용자 사용 행위 결과에 대해 식별 가능성과 개입 가능성이 강화됨. 한편 X AI 플랫폼 사용자가 생성하여 업로드한 울트라맨 LoRA 모델은 다른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용자가 다시 울트라맨 LoRA 모델을 추가하면 계속해서 더 많은 분쟁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어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결과를 초래하는 추세가 이미 상당히 명확하고 침해 내용 확산 위험이 높음. 따라서 B 회사는 분쟁 이미지의 생성에 대해 더 높은 주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해당 저작권 침해 행위 발생 가능성을 예견해야 함.

③ 예방 조치 실시 여부

앞서 언급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의 성질, 울트라맨 캐릭터의 높은 인지도, 침해 사실 및 침해 결과에 대한 B 회사의 인지 가능성과 함께 B 회사가 X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AI 생성 서비스를 통해 직접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 회사는 자사의 정보 관리 능력에 상응하는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침해 예방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나 X AI 플랫폼 사용자 서비스 약관에서 사용자의 업로드 및 게시 내용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X AI 플랫폼 홈페이지의 비교적 명확한 위치에 저작권 침해 신고 채널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음. 또한, B 회사가 본 안건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이미 웹사이트에서 울트라맨 관련 내용을 차단하고 백엔드에서 지식재산권 검사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통하여 B 회사는 웹사이트 홈페이지 검색, 탐색 및 이미지 게시, LoRA 모델 게시 과정에서 명확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본 안건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통제, 필터링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B 회사가 해당 침해 행위 발생 당시 자사의 기술 수준에 부합하는 필요 조치를 취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함.

상기한 사항을 종합하면, X AI 플랫폼은 울트라맨 이미지의 온라인 탐색, 다운로드, 공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중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를 획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B 회사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로서 X AI 플랫폼 사용자가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울트라맨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합리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주관적으로 과실이 있으며, A 회사의 정보네트워크전파권에 대한 간접 침해가 성립함.

3. 판례분석

본문의 판례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가 플랫폼을 통해 울트라맨 이미지에 대한 합법적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이미지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여 LoRA 모델을 생성 및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성된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를 다루었음. 해당 판례의 원고 A 회사는 이전에 본문의 판례와 유사한 사례로 제3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광저우 인터넷법원이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바 있는데[1] 이 판례와 비교하여 본문의 판례는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성격과 직접 침해 및 간접 침해의 인정 기준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본문의 판례를 분석함.

1) AI 서비스 및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성격 분석

본문 판례에서 법원은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전통적인 온라인 서비스와 구별하면서 AI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생산자와 플랫폼 관리자의 이중 역할을 하는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임을 명확히 하였음. 구체적으로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는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와 본질적인 차이를 가짐.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방법> 제22조는 생성형 AI 기술을 텍스트, 이미지, 콘텐츠 생성 능력을 가진 모델 및 관련 기술로 정의하고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를 해당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또는 개인으로 규정함. 이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 중개를 넘어 적극적인 콘텐츠 생성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임.

본문의 판례에서 X AI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술적 구조를 고려하면 B 회사는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하여 온라인 AI 이미지 생성 및 LoRA 모델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함. 그러나 법원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가 단순히 기술 제공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 생산자와 플랫폼 관리자의 이중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이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사용자의 입력에 기반하여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생성한다는 특성에서 비롯됨. 따라서 AI 서비스 제공자는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비해 간접 침해뿐만 아니라 직접 침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졌으므로 AI 서비스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AI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및 AI 서비스 제공자가 맡은 역할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책

1) (2024)粤0192民初113

임 여부가 결정됨.

2) 저작권 직접 침해 분석

법원은 직접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B 회사가 직접 분쟁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사용자와 분업·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 즉 법원은 B 회사는 분쟁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참고 이미지 등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여 데이터 학습을 진행하거나 사용자가 생성한 분쟁 이미지를 직접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데이터 학습용 울트라맨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분쟁 이미지를 생성·배포하는 과정에서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B 회사의 직접 침해를 부정하였음. 또한, 법원은 객관적 측면에서 분쟁 이미지를 생성하고 이를 공개하는 주체는 AI 서비스의 사용자임을 강조하며 주관적 측면에서도 사용자의 침해 행위와 AI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공동 제공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이는 법원이 AI 서비스 제공자가 단순히 기술 제공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기술적 특성상 생성 결과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됨.

3) 저작권 간접 침해 분석

본문의 판례에서 법원은 B 회사의 간접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AI 서비스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판단 기준을 설정하였음. 그 핵심은 과실 인정에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다층적 분석 구조를 구축하였음.

첫째, AI 서비스의 성격에 따른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설정하였음.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콘텐츠 제공 행위·저장공간 제공 행위·검색 링크 제공 행위 등과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AI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생산자와 플랫폼 관리자의 이중 역할을 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하였음. 이에 따라 주의 의무 인정 기준도 동종 업계의 합리적 서비스 제공자 기준으로 설정하여 기술 발전 수준과 침해 방지 비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과실 인정 기준을 마련함.

둘째, 법원은 저작물의 인지도와 침해 사실의 명확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울트라맨 캐릭터가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B 회사는 X AI 플랫폼에서 분쟁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비교적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을뿐만 아니라 맞춤형 훈련 모델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대량의 분쟁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저작권 침해의 결과가 확산될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음.

셋째, 법원은 B 회사의 예방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하였음. B 회사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분쟁 이미지를 식별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서비스 협정에서 콘텐츠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며 명확한 신고·삭제 채널도 마련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하였음.

그 외에도 법원은 X AI 플랫폼의 이익 모델과 저작권 침해 결과 발생 가능성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B 회사가 X AI 플랫폼에서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이용하여 직접적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점 역시 주의 의무 증대 사유가 된다고 보았음.

이를 종합하면 법원은 AI 산업 발전을 위해 AI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면서도 AI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 의무 판단에 있어서는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여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을 엿볼 수 있음.

4. 시사점

본문의 판례는 생성형 AI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을 위한 핵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음. 즉 법원은 단순히 기존의 저작권법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성형 AI 기술을 분석하여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침해 및 간접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참고할 가치가 높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참고자료

판례
- (2024)浙01民终10332号